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지원사업 - 소상공인(독립점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데이터 활용기술 보급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독립점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스마트상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지원사업 간단소개

#### ❶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란?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월정액(구독료)을 지불하고 경영관리·마케팅 등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❷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공단 기술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을 보급 지원합니다.(등록기술은 사업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독립점포)유형**이며, **SaaS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참여유형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❸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연간 국비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국비 100% 지원)

#### 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❺ 궁금한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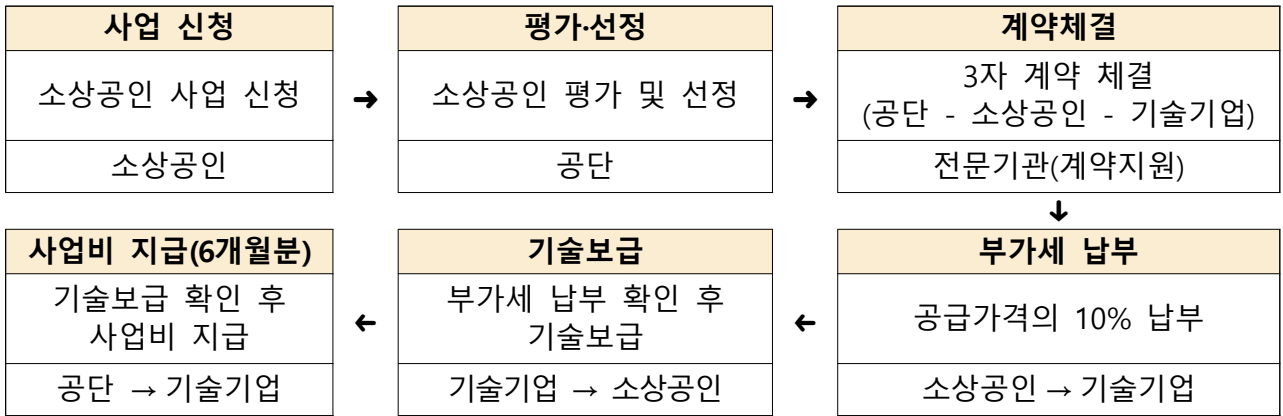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1

**스마트상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지원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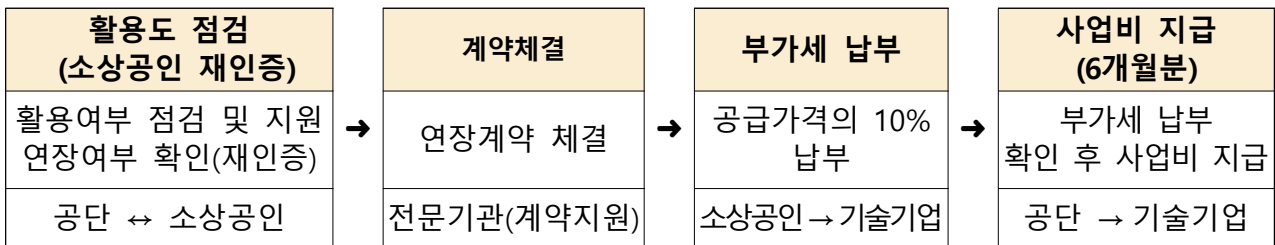
- (지원목적)** SaaS 등 데이터 활용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지원내용)** 공단 기술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 보급 지원
  - ※ 공단 기술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 이외 지원 불가(등록기술은 사업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http://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
- (선정규모)** 소상공인 사업장 3,000개\* 내외
  - \* 향후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6개월 단위 활용도를 점검하여 지원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년 지원
  - \*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불가
- (지원금액)** 연간 국비최대 30만원 한도
  - \* 부가세 별도(부가세는 국비 지원 불가)
  - \*\* 공단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은 부가세 미포함가로 표기
  - ※ 사업비는 기술설치 및 활용점검 이후 공단이 기술기업에게 6개월 단위로 일괄 집행
- (추가지원 허용)** SaaS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수혜상점(소상공인)의 추가지원을 허용
  - \* (예시1) ‘25년 일반형, 선도형, 렌탈형으로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25년 SaaS 추가지원 허용 (예시2) 스마트상점 사업(‘20~‘24)으로 기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25년 SaaS 추가지원 허용
  - ※ (추가지원 제외)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 (동일 SaaS 기술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추진체계)



□ (지원 연장신청)

- 6개월 단위 지원으로 최대 2년간 기술사용 연장여부(재인증) 확인 및 부가세 납부 절차 중복 수행(최초 계약 이후 6개월 단위 연장계약 체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7일(금) 10시 ~ 3월 21일(금) 24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사업 전용 홈페이지 신청·접수

-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http://www.sbiz.or.kr/smst/index.do)(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상점' 검색)

- (신청절차) ①회원가입 → ②사업신청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 기 회원가입자일 경우 기존 정보로 로그인하여 사업 신청(회원가입 절차 불필요)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필수서류 제출 등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 필수 증빙서류도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고,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약약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a href="https://sminfo.mss.go.kr">https://sminfo.mss.go.kr</a> )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a href="#">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a> - <a href="#">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확인서</a> <a href="#">발급이력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a>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요 건	세부 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1)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 신청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또는 기술공급업체 (대리점 포함)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
⑤ 기한 내 설치 불가	○ 정해진 기한 이내 SaaS 기술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⑥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기존 스마트상점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금번 사업을 통해 SaaS만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스마트상점 사업 신청 가능

### 3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최종심의)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 ① (서류검토) 1)필수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 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세부 평가내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의지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li> <l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li> <li>○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li> </ul>
지원사업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인지</li> <li>○ 자부담금 대납 불법여부 인지</li> <li>○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li> </ul>
스마트기술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li> <li>○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li> </ul>
스마트기술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li> <li>○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li> </ul>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 4      향후일정

<b>① 사업 신청</b>	<b>② 서면평가 및 최종심의</b>	<b>③ 선정발표</b>	<b>③ 계약체결</b>	<b>④ 기술보급 진행</b>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 공단	→ 공단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5. 3월	'25. 3월말	'25. 4월 중	'25. 4월 말	'25. 4월 말~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계약체결)** URL을 통해 전자계약 진행
- (기술보급)** 경영관리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급

## 5      문의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구분	권역	전문기관명	대표번호
①	서울·인천·강원	오렌지나무주식회사	<b>1600-6185</b>
②	경기	비스타컨설팅연구소	
③	경상	세종경영연구소	
④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 대표번호로 문의 시, 해당권역(소상공인 소재지)을 선택하면 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

**6**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브로커 등의 부당개입, 기술기업과의 유착\*(리베이트, 기존 거래 재사용 등)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 사업 대리 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 지원 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SaaS 기술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6개월 단위)하며, 중도 해지 불가(부가세 납부 금액 반환 불가)
- 의무사용기간 동안 SaaS 기술을 활용 및 유지·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지원받은 SaaS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 및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 \* 기술 선택 전 기술소개서 참조 및 기술공급기업 문의를 통한 충분한 관련정보 파악 필요
-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 활용도,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조사항)**

- SaaS 기술 설치 및 활용, 유지관리, 데이터(통계자료) 제공, 공단 현장점검 등 업무협조 필요

**7**      **참고자료**

- 【참고 1】 지원제외 업종
- 【참고 2】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모집 관련 Q&A

**참고 1**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http://www.sbiz.or.kr/smst/index.do)

#### < 신청절차 >

- ① 사업 전용 홈페이지 접속
- ② '소상공인 로그인' 버튼 클릭
- ③ 로그인 화면 이동(회원가입 버튼 클릭)
- ④ 회원가입(소상공인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 회원정보가 기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
- ⑤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 후 사업신청
- ⑥ 모집 공고명(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선택
- ⑦ 사업 신청 버튼 클릭
- ⑧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 지원 제외 대상 >

요 건	세부 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1)
②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 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또는 기술공급업체 (대리점 포함)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
⑤ 기한 내 설치 불가	○정해진 기한 이내 SaaS 기술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⑥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SaaS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상점('20~'24)이라도, SaaS 지원사업에 한해 추가지원이 허용됩니다.
-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금번 사업을 통해 SaaS를 지원받은 경우 향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추가지원 허용)

4. 일반형, 선도형, 렌탈형 등 '25년도 스마트상점 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SaaS 지원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25년 사업(일반형, 선도형, 렌탈형) 신청 또는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SaaS 지원사업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술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선택한 SaaS 기술로만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6. 국비 지원금으로 SaaS 사용료 지원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원하나요?

- 국비로는 부가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본 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미포함된 공급단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기술 POOL에도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표기)
- 따라서, 소상공인이 부가세는 기술공급기업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7. SaaS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단에서 기술기업에게 6개월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 지급합니다.

8.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상점에 SaaS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단 기술POOL 이외의 SaaS 기술은 지원 가능한가요?

공단 기술POOL에 등록된 SaaS 기술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0.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 지원 종료 이후, SaaS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공인 및 기술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